

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방법 확대

- '11. 7. 28. 시행 개정 공직선거법 -

개정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(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.시.군의 장)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.
- 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함.

개정취지

-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등이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후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구.시.군청이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 재외투표관리관도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 선거인 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제고함!